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29795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변 론 종 결	2019. 1. 10.
판 결 선 고	2019.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8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6, 7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E(이후 'A'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1. 8. 14.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는 유흥주점영업허가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점 영업을 하면서 위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29.-6. 5. 및 2014. 5. 29.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주점(룸살롱, 객실수 20, 접객원수 '유')이 있고 면적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전년과 동일하게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조사하였다. 한편, 위 2014. 5. 29.자 조사서에는 '19:55경 현장 출장하여 대표이사의 안내를 받았고 남자웨이터 2명이 있었고, 4번 방안에서 대표이사와 젊은 여자 5명이 밥을 먹고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redacted]구 C에 소재한 건물과 토지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D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8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부과되어 납부된 재산세(건축물) 및 종합토지세는 ① 57,880,470원{2013. 7. 재산세(건축물)}, ② 774,806,200원(2013. 9. 종합토지세), ③ 62,077,230원{2014. 7. 재산세(건축물)}, ④ 842,551,720원(2014. 9. 종합토지세)인데, 그중 중과세율이 적용된 금액 합계는 761,113,200원[= 28,373,240원(위 ①에 대하여) + 336,141,060원(위 ②에 대하여) + 30,257,660원(위 ③에 대하여) + 366,341,240원(위 ④에 대하여)]이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과된 합계 155,357,150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redacted]에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redacted]국 법인인 주식회사 F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이른바 '건전가라오케' 영업을 해왔고 원고도 설립 당시부터 건전가라오케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D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이에 따라 D와의 특약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D에게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보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8

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② 소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당부에 대해서도 다투는 취지로도 보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다만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이상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아래에서 살펴 보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에 포함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한 당연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자인 D가 아닌 원고가 'D가 중과세율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만큼의 금액을 특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는 유흥주점영업허가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위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점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위 허가와 달리 유흥접객원을 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8

지 않는 영업만을 영위하였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지나

판사 김근홍